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0. 10

다. 상 정 일 자 : 2000. 10. 16

(제8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 용 현

나. 폐지사유

-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노점상 융자 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는 폐지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는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 7. 첨 부 :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